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 7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7.(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홍주 과장(044-203-4360)	담 당 자	박이방 사무관(044-203-4362)

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

-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·합병·영업양수도 요건·절차 간소화 -

□ **중소기업**에게만 적용하는 **현행 사업전환 특례**가 **중견기업**도 **확대 적용**한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**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**이 사업전환(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)을 위해 다른 기업과 **주식교환·합병·영업양수도** 등을 추진할 시 관련 **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** 「**중견기업법**」(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)이 **개정·공포했다.**

< 개정 「중견기업법」 상 사업전환 특례 >

◆ **(개 요)** "중소"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「**중소기업 사업전환법**」**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**(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·절차)**을 「중견기업법」에서 일정규모* 미만의 중견기업에게도 준용**할 수 있도록 함('19.1.8일 공포, '19.7.9일 시행)

* 규모요건(매출액 일정수준 미만)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

◆ **(사업전환의 정의) 업종의 전환·추가**를 의미하는 것으로 **다음의 어느 하나**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(「중소기업 사업전환법」 제2조제2호)

1. **업종전환 :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**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2. **업종추가 :**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**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 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**으로 늘어난 경우

-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①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% 이상이 되거나 ②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%이상이 되는 경우

□ 예를 들면,「상법」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**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**하고자 할 경우, **이에 소요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**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.

○ 또한, **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내이기만 하면** 주주총회 승인 대신 **이사회 의결로 갈음**할 수 있게 된다.

○ 이밖에,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**채권자 이의제기 기간,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,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, 간이합병 등**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.

(☞ 세부내용 별첨 참고)

□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**산업부 장관**의 **승인을 받으면 된다.**

□ 기존 유사 제도인「**기업활력법**」(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)상의 **사업재편제도**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**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**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,

○ 사업전환제도는 **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**에 따른 **신사업 진출**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**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** 간 **전략적 제휴**와 **인수합병(M&A)** 등을 **활성화**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.

□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, "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**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**"가 **승인의 판단기준**이 될 예정으로,

○ 세부요건인 "대상 기업의 규모(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)"와 "사업계획 승인 절차"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**오는 7월초부터 시행**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박이방 사무관(☎044-203-4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**「상법」과 「중견기업법」 상 관련 절차 비교**

구 분		상 법	중견기업법 (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관련 조문 준용)
취지		■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중점 (대기업 및 상장기업 여건 고려)	■ 기업의 전략적 판단 고려 (비상장 기업 여건 고려)
주식교환	자기주식 취득	■ 엄격히 제한 (1. 거래소에서 취득 2. 각 주주 보유주식에 따라 균등조건으로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 3. 배당가능 이익 내일 것 등)	■ 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가능
	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기한	■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	■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
	현물출자 목적재산 검사	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	■ 회계법인 등의 검사로 갈음
	주식교환 승인	■ 주주총회 (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**10% 이내**인 경우 이사회 승인)	■ 주주총회 (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**50% 이내**인 경우 이사회 승인)
합병	채권자 이의제기 기한	■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월 이상 부여	■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0일 이상 부여
	주총 소집 통지 기한	■ 2주전 통지	■ 7일전 통지
	합병계약서 공시	■ 주주총회일 2주전 ~ 합병 이후 6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	■ 주주총회일 7일전 ~ 합병 이후 1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
	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	■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 → 주총결의 20일내 매수 청구	■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하고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
	간이합병	■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"**발행주식 총수**"의 90%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	■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"**의결권 있는 주식**"의 90%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

* "분할" 및 "분할합병"과 "영업양수도"의 경우에도 위 "합병"의 경우에 준하여 간소화된 요건이 준용됨